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85th October 2015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起承轉結(기승전결)

COVER STORY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무역 동향

FTA NEWS
FTA 원산지증명서의
상이한 HS CODE 처리지침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예정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⁷⁵
관세평가상 특허권 사용료의 처리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
신한인비스타 이전식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起承轉結(기승전결)



장승희
대표 관세사

기승전결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작법(詩作法)의 한 종류입니다. 시의 구성을 4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추어 역할을 주어 글을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삶이나 계절에도 기승전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인간의 유아기로 '일어날 起(기)'의 단계입니다. 이후 여름이 되어 청년기인 '이을 承(승)'의 단계에서는 성장을 이어갑니다. 가을과 같은 장년기는 '바꿀 轉(전)'의 단계로 도약을 할 수도 있고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을 結(결)'의 단계인 노년기가 되면 그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피카소는 추상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미술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어린 피카소에게 비둘기 발만 반복해서 그리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열다섯 살이 되자 나는 사람의 얼굴, 몸체 등도 다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비둘기 발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어느 때는 모델 없이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술을 처음 배우는 起의 단계 이후 비둘기 발만 반복해서 그리는 承의 단계를 끈기있게 거쳤기 때문입니다. 추상화가이며 도예가, 조각가로 성공한 轉과 結의 단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기형적으로 변한 발 사진으로 화제가 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도 초기에는 군무를 추는 낮은 배역으로 10여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강수진은 자신이 맡은 낮은 배역도 공연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라 생각하며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매번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 길을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나는 낮은 자리에 머무름을 비천해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해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올라갈 곳이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하루씩 두벅두벅 걸어 나갈 것이다.'

강수진이 듣고 싶어하는 큰 찬사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 낸 사람'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起와 轉과 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承의 단계는 누구든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랬듯이 강수진이 그랬듯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두벅두벅!

참고로 저의 이름에도 감사하게도 이을 承이 들어있습니다. 하루하루 두벅두벅 함께 가실까요??!!

*『생각의 탄생』 Robert and Michele Root-Bernstein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강수진



Cover
Story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무역 동향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와 송금을 비롯해 개인 자산관리나 크라우드 펀딩¹ 등이 가능한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기술을 말한다. 핀테크의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 혁신을 전통 핀테크로, 혁신적 비금융기업의 금융서비스 직접 제공을 신생 핀테크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 핀테크에는 모바일뱅킹이나 앱카드 등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포함되며, 애플페이, 삼성페이처럼 비금융 기업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신생 핀테크에 해당된다.

삼성카드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삼성페이'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페이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갤럭시노트 5에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기술²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카드정보를 입력해둔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 카드 결제기에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근접 무선통신(NFC)³ 결제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외의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해외직구가 더욱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해외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일명 '하이타오족(海淘族)'이라 부른다. '바다'를 의미하는 '하이(海)'와 '소비하다'라는 뜻의 '타오(淘)'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상품을 검색한 후 카드 번호를 입력, 제품을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들을 의미한다. 중국의 한 매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타오족은 해외직구에서 핀테크를 통한 결제가 70%에 가까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으로 핀테크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이타오족의 한국 상품 구매액은 6,000 억원으로 추정된다.

¹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²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벤처기업 루프페이가 특허를 낸 기술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긁으면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카드 정보가 단말기로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 대면 자기장이 나오도록 설계된 기술을 말한다.

³ 근접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무선태그(RFID) 기술 중 하나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로,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다. 스마트폰의 USIM 에 이용자의 신용 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을 NFC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애플페이와 모바일 티머니가 해당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제 수단이다.

지난해(2,900 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1 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하이타오족의 해외 직구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이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은 중국 광둥성의 성도이자 무역도시인 광저우에 이달 중 보세창고를 지을 계획이다. 중국인들이 많이 구입하는 상품을 창고에 미리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하는 역(逆)직구 물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최근 핀테크 산업 발전과 함께 해외 직구가 증가되어 해외 직구 등으로 수입하는 특송물품 교역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해외 직구시 이용 빈도가 높은 3kg 이하 특송물품의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나와 있는 '특급택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 올 10 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8 월 28 일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⁴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8 월 27 일 인천에서 칭다오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을 선적해 28 일에는 중국 칭다오세관 산하 대강(大港)세관을 통과한 후 중국 내 택배 회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전자상거래 해상통관절차가 없어 對중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을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하면 항공운송보다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최소 40% 이상 저렴하다. 그뿐만 아니라 X-Ray 검사만으로 세관 절차를 완료해 통관은 더욱 빨라지고, 정기 운송수단을 이용함에 따라 안정적인 배송이 이뤄져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은실
(esseo@customsservice.co.kr)

⁴ 페리선 [ferry-boat , -船]: 화물이나 여객을 적재한 열차나 자동차 등을 그대로 싣고 하천이나 해상을 운항하는 연락선

FTA News

FTA 원산지증명서의 상이한 HS CODE 처리 지침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 확인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FTA 발효 이후 기재요령과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인정 범위에 대해 일선세관 간 집행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품목번호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의 HS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 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가 가능하다.

(2)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이 불가능하고, C/O 상의 HS 가 수입국(우리나라)에서의 적용 HS 와 다른 경우 ①원산지결정기준은 6 단위 이상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6 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을 인정하거나 ② HS 2,4,6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는, C/O 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을 비교하여 서로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물품의 HS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처리 방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 상이한 HS CODE 의 예시

동일하거나 C/O 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보다 보수적인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원재료의 HS CODE 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재료의 HS 품목번호에서 품명에 따른 HS 품목번호(수입물품)으로의 세번변경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 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식적 오류가 확인되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1 년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외 거래처에 요청할 경우 HS CODE 일치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며, 해외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출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권 선 아

(sakwo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예정

1. 개정사유

녹용 및 전기냉방기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녹용의 경우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1로,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인하하고,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 2천원에서 4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간이세율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녹용	41
라.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27
마.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5

3. 시행일자 : 2015.9.9.

***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한's Opinions>>

동 개정에 따라 세율이 인화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년 9월 9일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인화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오니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 행정력 낭비 방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해 민원 제출방법 다양화
-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2. 주요 개정내용

□합동검사반 운영 방법 개선[제10조제2항]

- 검색기검사 후 정밀검사 지정화물에 대해 필요적 합동검사반* 검사실시 규정을 임의규정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 (구성) 화물검사, 통관부서, 일반조사, 마약조사, 마약탐지요원(견)

-원칙적 화물검사직원이, 필요 시 합동검사반이 검사수행

□민원서류 제출방법 다양화[제13조제1항]

- 인터넷 전자문서 제출 일상화에 따라 『검사해제 신청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록 개선

□인용 법령(고시) 개정내용 반영[제2조 등]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7개 인용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자 : 2015.9.17.

<<신한's Opinions>>

검사대상물품이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 등에 해당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신청서류는 우편, FAX로 제출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신청서류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편의가 향상 되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관세평가상 특허권 사용료의 처리

I. 들어가며

몇 년 전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관 정기 관세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경우로써,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유형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와 개발비를 누락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수가 많은 권리사용료 관세평가. 오늘은 이러한 권리사용료 중 특히 "특허권 사용료"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II. 특허권이란?

먼저 특허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은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 기관(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입니다.

국내, 외 각종의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조회 시스템(키프리스, www.kipris.or.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사용료는 독점적으로 소유된 '특허'를 사용,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특허가 "체화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물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 사용료의 지불이 관세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권 등의 권리와 연관되어 자주 등장하는 "체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체화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embodied"로 쓰이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특허의 내용 그 자체가 물품에 녹아들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관세평가 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권리사용료가 해당물품과 관련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이 관세평가상 문제가 되려면 지급되는 특허권 사용료가 있고, 해당 특허는 물품 자체 이거나, 특허에 의한 생산 노하우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의 개념과 관세평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통해 특허권 사용료가 관세평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III. 사례 탐구

수입업자는 특허를 받은 농축액을 특허권 보유자인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수입 후, 수입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농축액은 물로 희석되어 소매 포장됩니다. 수입 농축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과는 별도의 조건으로 수입업자는 특허를 받은 농축액을 혼합,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 대가로 제조업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권 사용료 금액은 수입국 시장에서의 최종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본 특허권 사용료는 관세평가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 그 자체가 **특허발명품**으로써, 특허와 물품간에 관련성이 있고, 해당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금액이며,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관세평가상 법정가산 요소에 해당하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 대한 판단처럼 특허권 사용료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시에는 크게 **3 가지 요소(관련성-체화되었는지? / 거래조건-지불없이도 수입이 가능한지? /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항에는 로열티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검토해본 결과 지불 없이는 물품의 구매,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V. 유의사항

관세평가상 특허권 사용료의 가산여부에 대한 검토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에 대한 지급, 마케팅 관련 비용 등은 가산되지 않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로열티 수수료는 반드시 수입물품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이어야 하며,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아이디어 또는 저작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재현생산권)에 대한 수수료 및 수입 후 제조, 사용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등에 대해서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구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수입국내 마케팅, 재현활동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금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 불가

가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된 특허권 사용료가 존재하지만, 이에 관련한 금액을 명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자료가 불충분 하거나, 여러 거래가 구분 계산이 안될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등) 거래가격은 결정될 수 없게 됩니다. 즉,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1 방법)에 의하지 못하고 2 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수행됩니다.

지금까지 특허권 사용료의 관세평가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종 호

jhshin@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 신한인비스타 이전식

안녕하십니까?

평소 신한관세법인과 신한인비스타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고객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귀하의 성원에 힘입어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와 신한인비스타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실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한관세법인 김포지사]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 78 김포센터 2 층

[신한인비스타]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 58 번길 35-28 물류센터 3 층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ABOUT WRITERS

COVER STORY -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무역 동향

FTA News-

FTA 원산지증명서의 상이한 HS CODE 처리지침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㉔ 관세평가상 특허권 사용료의 처리



서은실 관세사
(es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고객관리 본부 C/S 팀
- 前 서울본사 통관본부
- 수출입 통관 및 HS 품목분류 컨설팅



권선아 관세사
(sakw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고객관리본부 C/S 팀
- 前 글로벌 자문 부문
- 前 대전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컨설팅 전문
- 무역관련 법률자문
- FTA 원산지관리, AEO 경력 다수



유입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건설/기계 통관 및 품목분류 전문
- 환급컨설팅 전문



신중호 관세사
(j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자문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리 컨설팅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